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97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인 추가 ..	2
IV. 입법의 재정영향	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2. 4.

다. 회 부 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인 추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¹⁾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이하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1명)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1. ~ 9. (생략) <u><신설></u>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현행	개정안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는 제8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림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 구성은 중앙행정기관과 중앙단위의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위원 구성 】

구분	내용
심의사항 (제8조제1항)	1.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시행(제5조)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2.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3.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외에)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 구성 (제8조제4항)	1.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u>전문가로서</u>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2. 「산지관리법」에 따른 <u>중앙산지관리위원회</u>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3. <u>산림청</u>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u>고위공무원단에</u> 속하는 공무원 1명 4. 농업·농촌·농지 및 식품 관련 <u>전문가로서</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건축법」에 따른 <u>중앙건축위원회</u>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중앙도시계획위원회</u>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7.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u>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 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u>중앙환경정책위원회</u>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

산림복지 정책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지방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정책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지역별 산림자원 분포, 인구구조, 생활권 특성, 지역주민의 수요 차이 등이 정책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산림복지 정책 결정 구조의 중앙집중성은 지역 실정과 괴리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시설의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낮은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산림복지 정책은 산림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용 잠재력이 큼에도, 중앙집중적인 정책 결정 구조는 지역 특화형 산림복지 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지방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산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결정과 지방의 집행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완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복지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산림여건, 수요, 현안이 정책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가 있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률명	관련 조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이 「감사원법」 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각 1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4.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5.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6.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청년기본법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

법률명	관련 조문
	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²⁾

문 의 처
02)6788-5423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 개요

- 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능 : 산림복지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전문성 제고
- 구성
 - 위원장(산림청 차장)
 - 부위원장(산림청 산림복지국장)
 - 정부위원(5명) : 위원장, 부위원장,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 민간위원(16명) : 산림환경, 산림교육, 산림생태, 산림공학, 산림자원, 산림복원, 숲길, 조경, 건축, 생활환경, 도시계획, 농촌지역개발 등
 - * 여성 7명(43%), 비수도권 8명(50%), 현장전문가 9명(56%)
 - 간사(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장)

□ 심의사항

-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 관련 사항
-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료: 산림청